

『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2월 7일

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고, 위원회 및 단체에 견학실시 등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처리방법의 개선(안 제2조, 제5조)
-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 신설(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)

- 판매자가 봉투대금을 채납하는 경우 채납금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6항)
-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 조정(안 제17조)
-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단체 등에 대한 선진 시설 견학 근거 마련(안 제17조 및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15조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표준조례 (안) : 환경부 2006. 6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: 환경부. 2003. 7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및 관리자의 청결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및 단체에 대한 견학 실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안 제5조제6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고

○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,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음

-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봉투 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처리시민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포함시킨 폐기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 단체 등에 선진시설 견학 근거를 마련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